

기독교교육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의 목표에 근거하여 교회교육 지도자의 양성에 부합하는 연구활동과 한국 교회와 교단 기독교교육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조사와 연구자료의 수집
2. 기독교교육 관련 교재 집필 및 출판
3. 기독교교육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4. 교회학교 지도자 대상의 교육 및 강습회 개최
5.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임직원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약간인
3. 간사 약간인
4. 조교 약간인

제5조 (자격 및 임명) 1.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기독교교육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전임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은 소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3.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전임연구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주어진 연구소의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특별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 전임연구원은 간사를 겸직할 수 있다.

3.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집과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1.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2. 외부의 연구 지원금

3. 자체수익금

4. 기타

제11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 (승인 및 사업보고) 1.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2. 연구소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① 연구소의 사업운영보고

②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③ 연구소의 연구업적 수시보고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제1조 (규약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3조 (발효)

1. 본 규정은 1988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3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